

# 승객 탑승한 채 지연 등 「항공사업법」 위반 외국항공사 과징금 부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항공사업법」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,500만원, 1,000만원을 부과하였다.
  -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\*(10.18.)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.
    - \*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,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·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
-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「항공사업법」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-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·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였고,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「항공사업법」 제61조의2(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)의 규정\*을 위반하였다.
    - \*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(국제선)을 초과하여 대기 금지
  -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-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「항공사업법」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(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)를 위반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”이라며,
  - “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베트남항공>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선 (044-201-4231)
			주무관	김은진 (044-201-4230)
담당 부서 <에어로몽골리아>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희 (044-201-4208)
			주무관	김재형 (044-201-4217)

□ **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관련**

**法 제61조의2(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)**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(활주로·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·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승객의 하기(下機)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, 기상·재난·재해·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내항공운송: 3시간
2. 국제항공운송: 4시간

**令 제15조 별표 3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금액**

1. 일반기준

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**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**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			
		국제항공 운송사업	국내항공 운송사업	소형항공 운송사업	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
타. 소비자 보호					
1) 법 제61조의2제1항(법 제60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 제17호, 제59조 제1항제9호	5,000	1,000	200	5,000

## □ 운임 미허가 관련

**法 제14조(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)**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(국제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)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(우편물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**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**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法 제60조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)** ④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

### 令 제15조 별표 3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금액

#### 1. 일반기준

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**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**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			
		국제항공 운송사업	국내항공 운송사업	소형항공 운송사업	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
다. 운임 및 요금 1) 법 제14조제1항(법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<b>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</b>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 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5호	2,000		200	2,000